

『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자연재난의 대형화,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
-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 구성 필요성에 따라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(안 제4조)
 - 단장 1명, 부단장 1명, 간사 1명 및 단원 등으로 구성
 -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개인, 단체, 동호회 등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,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음

○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무(안 제5조)

- 방재단의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자율방재단을 대표
-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

○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(안 제7조)

- 협의회는 방재단장,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, 읍면동대표,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

○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(안 제8조)

-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

○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(안 제10조)

- 단원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
- 방재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재단의 단원은 비상 단계시부터 구미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음

○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(안 제13조)

-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

4. 참고사항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재난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임원 구성과 임무 명시(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)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(안 제7조)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명시(안 제8조)
-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○ 검토 결과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-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, 각종 재난 발생시 자율방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